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

2024. 9.

관계기관 합동

│. 추진배경

- □ '23년 보험계약에 대한 新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에 따라보험부채를 시가평가(↔ 종전 IFRS4: 원가평가)
 - 이 시장 금리 및 손해율, 해지율 등 결산 시점의 최적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을 현가化 → 평가액 변동성 증가
- □ 이에 계약자 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의 사외유출을 방지하는 "해약환급금준비금"을 마련('22.12월)
 - * 시가평가된 IFRS17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은 경우 그 부족액을 적립
 - 이 해당 준비금은 세법상 손금 처리하고, 배당재원에서 제외
- □ 해약환급금준비금에 대해 아래의 이슈사항이 제기됨
 - ① (주주배당) '밸류업'을 위한 배당요구가 회사 내외에서 증대되나 준비금 부담으로 배당가능이익*이 축소되거나 배당 불가
- ※ 배당가능이익(상법§462) = 순자산(자산-부채) 자본금 법정준비금 미실현이익
 - 신계약 판매에 따라 준비금 적립액이 지속 증가*하여 단기 내 배당 확대가 불확실
 - *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액: ('22末)23.7조원 → ('23末)32.2조원 → **('24.6月)38.5조원**
 - 금융위원장 업권 간담회 등에서 제도개선 필요성 지속 건의
- ② (법인세)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전액 과세표준에서 제외(손금 인정) 되므로, IFRS17 전환 이후 회계상 이익 대비 과소납세 이슈* 제기
 - * **당기순이익**: ('22)9.2조원 → ('23)13.4조원 (**전년대비 4.2조원**↑) 법인세 납부액 : ('22)3.4조원 → ('23)0.8조원 (**전년대비 2.6조원**↓)
- ☞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당·납세기준 마련을 위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할 필요

Ⅲ. 현행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

- □ (법인세) 현행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는 **종전 회계기준**(IFRS4)과 과세표준 측면에서 일관성을 확보하는 효과
 - 법인세법은 보험부채(책임준비금)를 손금 산입하여 세법상 비용인정
 - → 전환시점 **부채 감소**로 인한 **일시 세 부담 급증**이 문제됨
 - 이에 원가부채(≒해약환급금)와 IFRS17 시가부채 간 차액인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하고 손금으로 인정('22.12월 세법 개정)
- → 결과적으로 **원가부채**(시가부채+해약환급금준비금) **과세기준 유지**



- □ (주주배당) 반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종전(IFRS4) 대비 축소
 - o 해약환급금준비금 관련 **이연법인세부채*가 발생**하는 영향
 - * 손금 인정으로 당기 납부하지는 않았으나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를 부채로 계상





☞ 종전(IFRS4) 대비 과세표준은 일관적이나 배당가능이익은 감소

Ⅲ. 개선방안

- ◈ 「밸류업」기조에 맞추어 일정 범위 보험회사는 기업의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
 - → 보수적 자본건전성 충족 : 배당가능이익 일관성 확보(개선) - 그 외 : 법인세 과세표준 일관성 유지(현행)
- □ (주주배당) 시행초기에는 보수적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한해 종전과 배당가능이익이 유사하게 확보되도록 개선
 - IFRS17 안착 기간·자본의 사외유출 확대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(예:5년) 보수적 자본건전성 조건 부여
 - 조건 충족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법인세율 등을 고려하여
 현행 대비 일정 비율*(예: 80% 등)만 적립
 - * 해약환급금준비금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고려시 종전 회계기준(IFRS4)과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산출되는 적립비율

< 개선안 적용시 법인세·배당가능이익 영향(예시)>



- □ (법인세) 손금 인정액도 감소하여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 과소납세 이슈 해소 가능
 - 다만, 납세시기가 일부 앞당겨짐에 따라 단기 납세액이 종전
 대비 증가할 소지(납세 총량은 동일)
- ☞ 종전(IFRS4) 대비 배당가능이익의 일관성 등이 커지고 과세표준은 증가

- □ (적용기준) 시행초기 자본유출 증가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K-ICS 비율을 고려하여 개선안을 점진 적용할 필요
 - 향후 금리변동 등 **대내외 여건**과 IFRS17 **연착륙 일정****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**보수적 K-ICS 비율 설정**

※ 할인율 단계적 현실화 방안 ('23년 旣발표사항)

산출요소	현행	개선방안		
장기선도금리	조정폭 한도 15bp	• 매년 조정폭 한도를 25bp로 확대	'24년	
		• 대출채권 수익률 결정방식 현실화	′24년	
유동성프리미엄	98bp	• 예상하지 못한 위험도 포함되도록 산식 조정	'27년	
		• 조정비율 수준을 100%에서 합리화	'26년	
시장데이터 사용구간	20년	• 실제 국고채 수익률 활용구간(최종관찰만기)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	'25년	

- '24년 200%를 기준으로 매년 10%p씩 하향 조정*하여 일반적 권고치 수준 150%에 도달하도록 순차적 확대 원칙
 - * 개선안 적용 K-ICS 기준: ('24년) 200% → ('25년) 190% → (...) → ('29년) 150%
- 다만, 향후 시장상황 변화 등 필요시 기준치를 일부 조정할 수
 있는 근거를 마련(금융위원장 고시 방식)
- □ (기대효과) 개선안 적용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3.4조원 감소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0.9조원 증가한 1.7조원으로 추정('23末 기준)
 - 배당가능이익은 준비금 감소폭 3.4조원만큼 증가(종전수준 회복)

< 개선안 적용시 준비금·법인세납부액 추정('23년 기준) > (단위: 조원)

구분	해약환급금준비금			법인세납부액		
	현행	개선안	감소폭	현행	개선안	증가폭
생보	17.2	15.0	2.2	0.1	0.6	0.5
손보	15.0	13.8	1.2	0.7	1.1	0.4
계	32.2	28.8	3.4	0.8	1.7	0.9

☞ 자본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면서 주주배당 촉진 기반 조성 및 적정 수준 법인세 납부 기대

※ 일부 수치 등은 규정 개정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

Ⅳ. 향후 추진계획

- □ 보험업감독규정(제6-11조의6) 개정(~12월)
- □ '24년 연말 결산시 개선안 적용